

부패행위 등 상담, 신고, 적발 사례관리 (2022년)

순번	일자	사례 내용	관련 법령
1	2022. 5.18.	<p>[상담] 부동산 취득 신고대상 여부</p> <p>문) 1. 공사 사업지구 내 분양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2.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이전의 기 보유 부동산도 신고 대상인지?</p> <p>답1) 분양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신고대상 아님. 답2) 기 보유한 부동산은 영 제2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당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등이 새로 공고·공시된 경우는 신고대상.</p>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2	2022. 7. 4.	<p>[상담] 수의계약의 범위</p> <p>문)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되는 자*의 사업체에서 공직자**가 「지방계약법」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수의계약대상 미만의 금액을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할 경우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p> <p>답)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구매 품목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가 소액의 지출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법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p>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순번	일자	사례 내용	관련 법령
3	2022. 7. 4.	<p>[상답]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직자의 범위</p> <p>문)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직자A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공직자A의 관여 없이 공직자B가 수의계약하는 경우 이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인지?</p> <p>*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 : 계약부서 실무자 및 그 결재권자 -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 : 사업부서 실무자 및 그 결재권자</p> <p>답) 법 제12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는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로서, 계약담당 부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소속 공공기관은 그 공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음.</p>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4	2022. 7. 4.	<p>[상답] 수의계약 체결 확인서의 인정범위</p> <p>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를 확인했으나 계약 이후 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발견되었을 시 법 제12조제2항** 위반인지?</p> <p>* 제12조제1항 위반 :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 체결 ** 제12조제2항 위반 :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p> <p>답)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제10호 서식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임에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위로 작성한 계약 상대방 또는 허위작성 하도록 유도한 공직자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p>	이해충돌방지법 제 12조

순번	일자	사례 내용	관련 법령
5	2022. 8.18.	<p>[상답] 설문조사 참여대가 수수의 위법여부</p> <p>문) 설문조사 참여의 대가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조사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p> <p>답) 「청탁금지법」 제8조제1,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 하지만 법 제8조제3항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므로, 설문조사 참여대가 수수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단, '정당한' 권원의 존재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품등의 제공 목적,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함.</p>	<p>청탁금지법 제8조</p>